



가축수송차량 안전작업



소형화물운수업

가축수송차량란?

가축수송차량(Cattle delivery truck)은 소 또는 돼지를 축사에서 도축장 등 유통업체까지 운반하기 위해 제작된 차량으로 최근에는 비와 해를 가릴 수 있는 지붕 부착형과 윈바디를 결합한 형태까지 제작되고 있다. 가축수송차량은 수송 가축의 스트레스 감소와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 환기 성능을 갖춰야 하며, 비 또는 배설물 등에 의해 미끄러운 바닥에서 편하게 설수 있도록 미끄럼방지 바닥과 배수가 가능하여야 한다.



가축수송차량 그림



가축수송차량





주요 위험요인

-  **상차 중 가축 넘어짐**
경사 작업발판을 통한 가축의 상차작업 시 미끄러짐, 넘어짐에 의한 재해위험
-  **교통사고 발생**
원거리 가축 운송수단으로의 활용과 큰 무게의 생물체 운반 등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음
-  **가축의 전염병 감염 및 방역소독제 피부질환 등 건강장애 위험**
최근 구제역 등 전염병 감염 가축의 운반으로 인한 근로자 감염사고 발생위험

안전대책

- 작업시작 전 점검실시**
 - 브레이크등 등 전기 점등장치 이상 유무 확인
 - 브레이크액 등 각종 오일의 급유상태 확인
 - 타이어의 마모 또는 손상 이상 유무 확인
- 상차대의 경사발판의 설치**
 - 상차대의 발판통로는 20° 미만의 경사로 유지
 - 이동통로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도록 하고 최소 두 마리 이상의 돼지가 동시 통과가 가능하도록 조정
 - 돼지 진행방향의 뒤쪽에서 물이판을 사용하여 이동
- 교통사고 예방조치**
 - 장기 운행 시 적절한 휴식시간 준수
 - 적재함 뒷문 고정 장치 확인
 - 차량의 급제동, 회전 시 가축의 쏠림, 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칸막이 등 쏠림 방지조치 실시
(적재함 면적이 10m² 초과 시)
 - 적재함 바닥에 요철형 깔판을 설치하여 가축의 미끄러짐 방지
 - 가축별 운송밀도 준수
- 개인 보호구 착용 및 건강보호 조치 실시**
 - 방진 마스크, 보호의 착용
 - 방역소독제 접촉 시 피부세안 실시



재해사례 : 가축수송 차량 운행 중 가축 쏠림으로 인해 사고발생

개요

2011년 6월 30일 오전 2시 50분께 경북 의성군 안평면 중앙고속도로에서 소 20마리를 싣고 안동 방면으로 달리던 4.5t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0m 아래 지방도로에 떨어짐. 이 사고로 운전자 임모(42)씨가 다치고 싣고 가던 소들이 튕겨 나오면서 전체 20마리 가운데 8마리가 죽었음



발생원인

- 소를 운반하던 중 실려 있던 소들이 한 쪽으로 쏠리면서 차가 중심을 잃어 발생

예방대책

- 가축수송차량의 적재함 면적이 10m²를 초과할 경우 쏠림 방지를 위한 칸막이 설치
- 커브길에서는 적재함에 실린 가축의 무게를 고려하여 평소보다 속도를 낮추고 주의하여 운전



안전수칙

- 가축 수송 시 적정 두수를 준수하여 적재한다.
- 필요 시 가축의 쏠림방지를 위한 칸막이를 설치한다.
- 상차대, 이동통로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.
- 가축 수송 전·후 방역을 실시한다.
- 가축수송차량 방역 시 방진·방독 검용마스크 및 보호복을 착용한다.
- 수송차량의 각 타이어의 공기압과 손상 유무를 확인한다.
- 각종 오일(엔진오일, 파워핸들 오일, 자동변속기 오일 등)의 양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.
- 브레이크 등, 전조등 등 전기 점등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.
- 적재함 뒷문의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.
- 장시간 운행 시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.



관련 법령

- 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08-65호, 2008. 8. 4.제정
 - 제4조 (동물운송차량 구비 및 설비조건)
 - 제5조 (운송밀도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 - 제603조 (예방조치)
 - 제604조 (노출 후 관리)

